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주체 공모사업 FAQ

2023.10.19.(목) / 시각예술부

2024년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주체 공모사업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문 및 답변				
1	사업유형	<p>Q(1-1) 시각예술창작산실과 시각예술창작주체의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p> <p>A(1-1) <시각예술창작산실>은 단기간(1년) 집중적으로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원하며, <시각예술창작주체> 사업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 간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p>				
2	자격기준	<p>Q(2-1) 행정인력 참여가 필수이던데, 행정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어떤 분을 섭외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p> <p>A(2-2) 지원신청 대상인 개인, 단체, 공간 구분 없이 행정인력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행정인력은 사업 수행에 있어 진행되는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집행 및 정산), 교부신청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 등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를 일임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위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실무자분이면 별도 이력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단체에 따라 기획보조(코디네이터 등)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관리와 함께 행정전담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신청주체가 단체나 공간이 아닌 개인인 경우 사업의 규모가 작고, 참여인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 본인을 행정인력으로 기재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인력을 고용하시게 될 경우, 인건비로 집행 가능하시며 고용의 경우가 아니라면, 참여 사례비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p>				
		<p>Q(2-2)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에서 여러 사업에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가요?</p> <p>A(2-2) 여러 사업에 신청과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에 명시된 하단의 이미지에 따라, 선정은 최대 3건까지 가능하며, 시각예술창작산실과 시각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은 동시에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택 1 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문예진흥기금 다중선정제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다중 선정 제한</td> <td>(3건까지)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만 가능 4건 이상 선정 시 3건의 사업을 지원선정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td> </tr> <tr> <td>(창작) 창작영역 사업 중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 사업은 동시 선정 불가. 동시 선정 시 지원선정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 창작의과정·창작산실 / 창작주체 사업 중 선택</td> </tr> <tr> <td>(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 특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 불가</td> </tr> </table>	다중 선정 제한	(3건까지)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만 가능 4건 이상 선정 시 3건의 사업을 지원선정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창작) 창작영역 사업 중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 사업은 동시 선정 불가. 동시 선정 시 지원선정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 창작의과정·창작산실 / 창작주체 사업 중 선택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 특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 불가
		다중 선정 제한		(3건까지)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만 가능 4건 이상 선정 시 3건의 사업을 지원선정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창작) 창작영역 사업 중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 사업은 동시 선정 불가. 동시 선정 시 지원선정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 창작의과정·창작산실 / 창작주체 사업 중 선택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 특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 불가						
<p>Q(2-3) (공간) 상업공간은 제외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때 상업공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p> <p>A(2-3) 작품 판매, 거래,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한 상업활동과 이윤창출을 주 목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자격요건은 지원주체가 판단하여 지원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심의 시 지원신청 주체의 주요 활동, 이력, 비전 및 목표 등의 내용이 참고됩니다.</p>						

3	지원내용	<p>Q(3-1) 해외에서 전시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3-1)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일부 해외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3년의 기간 전반에 활동 주목적이 국제교류 및 해외활동일 경우 정책영역의 '국제교류'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Q(3-2) 지원신청액은 3년 동안 나눠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1년 당 금액인가요? A(3-2) 1년 당 금액입니다. 최종 지원결정액이 5천만원일 경우, 한 해당 5천만원씩, 총 3년간 1억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신청서에는 연도마다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해주셔야 합니다. (예) 총 1억 5천만원 일 경우 → (O) 1차년도 : 5천만원 / 2차년도 : 5천만원 / 3차년도 : 5천만원 → (X) 1차년도 : 3천만원 / 2차년도 : 3천만원 / 3차년도 : 9천만원</p> <p>Q(3-3) 소/중/대규모는 유형별로 정해진 사업의 내용이 있나요? A(3-3) 지원액 총액의 차이일 뿐 유형별로 사업 내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p>
4	지원신청서 작성	<p>Q(4-1) 예산 항목별로 정해진 예산 가이드가 있나요? 예컨대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 여부나, 기획자나 작가 사례비 최대 한도, 역할에 따른 중복 지급, 임차료 적정 비중 등이 궁금합니다. A(4-1) 항목별로 정해진 지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각예술창작주체의 경우 단체 및 공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월세)는 최대 50% 이내까지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통상 현장에서 집행하시는 금액을 반영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책정이 가능하며, 기획자나 작가 사례비에 대한 최대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한 분의 역할이 여러 개일 경우 해당 역할별로 사례비를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시와 비평서 출판을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전시기획 사례비와 원고료 책정이 각각 가능합니다. 임차료, 사업추진비 등의 적정 비중에 대한 가이드는 없으나, 전체 사업에서 주요 항목이 아닌 부분은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 <p>Q(4-2) 개인/소규모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필수 편성인가요? A(4-2) 신청 주체 및 지원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 주체는 자기부담금을 10% 이상 편성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지원신청액이 아닌,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책정해주셔야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Q(4-3) 회계검증 수수료는 매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A(4-3) 네, 매년마다 회계검증을 이행되므로, 매년 회계검증수수료를 편성해주셔야 합니다.</p>
5	제출자료	<p>Q(5-1) 지원신청서를 워드(docx 확장자)로 제출해도 되나요? A(5-1) 지원신청서는 hwp 혹은 pdf로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워드의 경우, 지원신청자가 보셨을 때 파일이 깨져보이지 않더라도 컴퓨터 환경에 따라 파일이 깨져보일 수 있습니다.</p>

	<p>Q(5-2)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수행 대표 실적보고서는 어떤 서류를 의미하나요? 양식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p> <p>A(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등 시각예술분야 등의 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수행 후 기관에 제출하신 결과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제출하셨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p>
	<p>Q(5-3) 최근 5개년 이상 활동 이력 증빙자료는 자유양식이던데, PPT 확장자로 제출해도 되나요?</p> <p>A(5-3) PPT의 경우에도 특정 폰트의 유무 여부 등에 따라 파일 내 글씨가 깨져 보일 수 있으므로 pdf 변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p>
	<p>Q(5-4)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은 혹시 어려운가요?</p> <p>A(5-4)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제출 회수 후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 18:00 이전까지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p>